

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416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3. 12. 6.

제출자 : 달성군



1. 제안이유

퇴직자(기계운영) 발생에 따른 직급(직렬)변경 및 교육정책과 교육재단설립TF팀 해체에 따라 발생한 정원 3명에 대한 효율적인 재배치를 위한 행정기구 및 정원 조정

2. 주요내용

가.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사항

- 팀 단위 개정사항

- 안 제8조제2항제1호 : 건설과 - 분리(도로정비 → 도로정비, 도로관리)
- 시행규칙안 제22조제2항 : 구지면 - 신설(청소)

나. 조례 내 조문의 통일성을 위한 개정사항

- 안 제4조제4항 : 정책사업1·정책사업2·정책사업3 → 정책사업
- 안 제8조제2항제8호 : 공공시설1·공공시설2·기전 → 공공시설·기계전기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(1)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

(2)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~제14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기타

(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
(2) 입법예고(2023. 11. 2. ~ 11. 22.) 결과 : 의견 없음

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(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(5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
(6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(7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4항 중 “정책사업1·정책사업2·정책사업3”을 “정책사업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제1호 중 “건설행정·도로시설·도로정비·보상”을 “건설행정·도로시설·도로정비·도로관리·보상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8호 중 “공공시설1·공공시설2·기전”을 “공공시설·기계전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·보조기관의 설치) ④ 정책추진단장은 <u>정책사업1·정책사업2·정책사업3</u>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제8조(건설도시국) ② 건설도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건설행정·도로시설·<u>도로정비·보상</u>에 관한 사항</p> <p>8. <u>공공시설1·공공시설2·기전</u>에 관한 사항</p>	<p>제4조(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·보조기관의 설치) ④ ----- <u>정책사업</u>----- -----.</p> <p>제8조(건설도시국) ② ----- -----.</p> <p>1. -----·<u>도로정비·도로관리</u>· -----</p> <p>8. <u>공공시설·기계전기</u>-----</p>

□ 지방자치법

- 제125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-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
-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·자격·보수·복무·신분보장·징계·교육·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-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.
-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,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- 제13조(시·군·구의 기구설치기준)** ① 시·군·구 본청의 실·국이나 과·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·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시·군·구 본청에 두는 실·국이나 실·과·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- ② 시·군·구 본청의 실장·국장과 과장·담당관의 직급과 실·과·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- 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는 관할 시·군·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.
- 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실·국과 실·과·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·도와 시·군·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

- 제14조(시·군·구의 실장·국장·담당관·과장 등의 직급기준)** 시·군·구 본청에 두는 실장·국장·담당관과 과장 등 보조·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